구 분	의 료 행 위 명 칭	수 가 코 드
. <u>-</u>	1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 우-판독료	HJ501
	16.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3차 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5
	17.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1
	18.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외부 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5
	19.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1
	2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외부 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5
뇌척수액 검사	요추천자[뇌척수압 측정 포함]	C8000
	1. 각성뇌파검사-18채널미만 2. 각성뇌파검사-18채널미만(이동뇌파를 실시한 경우)	F6141 F6142
	3.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1
	4.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이동뇌파를 실시한 경우)	FA142
	5. 수면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5
	6. 수면뇌파검사-18채널미만(각성뇌파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F6144
	7.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5
	8.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FA144
	9. 특수뇌파검사-약물 또는 물리적유발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7
	10. 특수뇌파검사-약물 또는 물리적유발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7
뇌파검사	11.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 채널 미만	F6148
	12.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 채널 이상	FA148
	13.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 채널 이상-나비뼈전극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	F6140
	14. 보행뇌파검사-4시간 이상~8시간 이하	F6143
	15. 보행뇌파검사-8시간 초과	F6146
	16. 지속적 뇌파 감시[1일당]	F6149
	17.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외,1일당]-64채널미만	F6151
	18.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외,1일당]-64채널이상	F6153
	19.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내,1일당]-64채널미만	F6152
117107	20.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내,1일당]-64채널이상	F6154
심장CT	1.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고해상력	HA424

구 분	의 료 행 위 명 칭	수 가 코 드
	2.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	HA434
	타의경우	
	3.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HA464
	4.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4
	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삼차원	HA524
	6.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CT 혈관조영	HA534
	7.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Cine CT	HA554
	8.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제한적 CT	HA444
	9.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834
	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일반-촬영료 등	HI124
	2.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촬영료 등	HI224
	3.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촬 영료 등	HI324
	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일반-판독료	HJ124
	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4
	6.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판독료	HJ324
	7.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 과 전문의	HJ624
	8.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4
	9.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일반- 촬영료 등	HI140
심장MRI	1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 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40
	1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 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40
	12.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일반 -판독료	HJ140
	13.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 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40
	1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 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40
	1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 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40
	16.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 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40

구 분	의 료 행 위 명 칭	수 가 코 드
	1.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심초음파	EB430
	2. 심장-경흉부 심초음파-단순	EB431
	3.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EB432
	4.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전문	EB433
심장	5. 심장-부하 심초음파-약물부하	EB434
초음파검사	6. 심장-부하 심초음파-운동부하	EB435
	7. 심장-태아정밀 심초음파	EB436
	8. 심장-경식도 심초음파	EB611
	9.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심초음파	EB610
	10. 심장-심장내 초음파	EB612

- 주) 1.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국민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진료행위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해당 진료행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표115 급여 혈관조영술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혈관조영술"로 분류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3.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 분	의 료 행 위 명 칭	수 가 코 드
	1. 두경부 동맥조영-추골동맥	HA601
	2. 두경부 동맥조영-총경동맥	HA602
뇌혈관	3. 두경부 동맥조영-외경동맥	HA603
조영술	4. 두경부 동맥조영-내경동맥	HA604
	5. 두경부 동맥조영-내경동맥폐색검사(조영술료 포함)	HA606
	6. 두경부 동맥조영-전뇌동맥	HA605
	1. 흉부 동맥조영-우심방조영	HA610
	2. 흉부 동맥조영-우심실조영	HA611
	3. 흉부 동맥조영-좌심실조영	HA612
	4. 흉부 동맥조영-좌심방조영	HA613
관상동맥	5. 관상 동맥조영	HA670
조영술	6.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 본래의 관상동맥조영촬영 포함]	HA680
	7.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 본래의 관상동맥조영촬영 포함]	HA681
	-2개혈관부터 최대3개혈관	
	8.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 본래의 관상동맥조영촬영 포	HA682
	함]과 동시 촬영된 좌심실조영촬영	

- 주) 1. "급여 혈관조영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국민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진료행위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해당 진료행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표116 급여 신경차단술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신경차단술"로 분류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3.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의 료 행 위 명 칭	수가코드
지주막하 신경차단술	LA210
경막외 신경차단 술 -일회성 차단	LA321, LA322
경막외 신경차단 술 -지속적 차단	LA222~LA228
경막외 저장기펌프 제거술	LA330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LA340, LA341, LA232~LA23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LA241~LA245, LA247~LA249, LA346,
	LA347, LA270~LA276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LA251, LA253, LA352~LA359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LA261, LA264, LA265, LA361, LA362,
	LA366, LA367

- 주) 1. "급여 신경차단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국민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진료행위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해당 진료행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표11기 급여 신경파괴술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신경파괴술"로 분류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3.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의 료 행 위 명 칭	수가코드
지주막하 신경파괴술	LB310
경막외 신경파괴술	LB320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파괴술	LB331, LB333~LB336
척수신경 및 말초지파괴술	LB341~LB346
교감신경절 및 신경총파괴술	LB351, LB353~LB355, LB412, LB413

- 주) 1. "급여 신경파괴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국민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진료행위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해당 진료행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표118 급여 6대질병진단검사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6대질병진단검사"로 분류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3.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수가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0 - 0 -	국는 구기고드에 엥이는 의료성치를 글립니다. 	
구 분	의 료 행 위 명 칭	수 가 코 드
양전자단층촬 영(PET)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다339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다246
전산화단층영 상진단(CT)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다245 다245-1
초음파	[기본초음파] 단순초음파 [진단초음파] 두경부 흉부 심장 복부 근골격, 연부 혈관 신경 임산부 응급·중환자 초음파 [유도초음파] 유도초음파 [특수초음파]	나940 나941 나942 나943 나944 나946 나948 나950 나951 나952 나956
간기능 검사	총빌리루빈[화학반응-장비측정] 총빌리루빈[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총단백[화학반응-장비측정]/ 총단백[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ALT (SGPT) [화학반응-장비측정]/ ALT (SGOT) [화학반응-장비측정]/ AST (SGOT) [화학반응-장비측정]/	D1830 D1831 D1840 D1841 D1850 D1851 D1860 D1861

구 분	의 료 행 위 명 칭	수 가 코 드
	알칼리포스파타제[화학반응-장비측정]/	D1870
	알칼리포스파타제[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D1871
	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D1880
	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D1881
	γ-GTP [화학반응-장비측정]/	D1890
	γ-GTP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D1891
	기본폐기능검사 [기류용적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F6001
호흡기 기능	기류용적폐곡선 [기본폐기능검사 포함]	F6002
오급기 기능 검사	호흡기능검사-잔기량 및 폐용적측정(체적기록법[플레디스모그	F6006
급시	래피에 의한 것])	
	호흡기능검사-일산화탄소확산능측정	F6010
	크레아티닌 화학반응-장비측정	D2280
신장기능	크레아티닌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D2281
선성기 능 검사	요소질소[NPN포함]/	D2300
	신장기능검사[채혈법]-사구체여과율검사	E7441
	신장스캔-사구체여과율검사	HC182

- 주) 1. "급여 6대질병진단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국민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진료행위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해당 진료행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표119 수술보장대상 질병및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OO ~ 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다음 '가~마'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정신 및 행동 장애(FOO ~ F99)로 인한 질병
 - 나.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다.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 라.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마.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③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④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⑤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주) 1.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상의 분류코드이며, 제9차 개정 이후 상기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및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는 질병의 진단 및 재해 발생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및 재해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3.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표120

신수술 분류표



1. 보장대상 수술코드

구분	수술명	수술코드
간 이식	간 이식	A010
폐 이식	폐 이식	A020
심장 이식	심장 이식	A030
췌장 이식	췌장 이식	A040
소장 이식	소장 이식	A050
조혈모세포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동종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자가이식	A061 A062
신장 이식	신장 이식	A070
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 (ECMO), 개심술 미동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개심술 미동반	A080
기관 절개술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미사용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미사용	A091 A092 A093 A094 A095 A096
사지 이식	사지 이식	A100
뇌동맥류 수술	복잡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동반) 단순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동반) 복잡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미동반) 단순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미동반) 뇌동맥류 색전술(뇌졸중 동반) 뇌동맥류 색전술(뇌졸중 미동반) 뇌동맥류 복합 수술(뇌졸중 동반)	B011 B012 B013 B014 B015 B016 B017 B018

[별첨2] 표 120. 신수술 분류표

구분	수술명	수술코드
뇌혈관 수술	두개내 혈관 수술(뇌졸중 동반) 두개내 혈관 수술(뇌졸중 미동반)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맥루 색전술(뇌졸중 동반)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맥루 색전술(뇌졸중 미동반) 경피적 뇌혈관 수술(협착 · 폐쇄 및 혈전제거 동시의 경우) 경피적 뇌혈관 수술(협착 및 폐쇄의 경우) 경피적 뇌혈관 수술(혈전제거의 경우)	B021 B022 B023 B024 B025 B026 B027
혈종제거술 및 기타 개두술 (외상 제외)	혈종제거술(외상 제외) 두개내 감압술(외상 제외) 두개골 성형술(외상 제외)	B031 B032 B033
두개외 혈관수술	두개외 혈관수술(뇌졸중 동반) 두개외 혈관수술(뇌졸중 미동반) 경피적 두개외 혈관수술	B041 B042 B043
뇌기저부 수술	뇌기저부 수술	B050
뇌종양 절제술	복잡 천막상부 종양절제술 단순 천막상부 종양절제술 복잡 천막하부 종양절제술 단순 천막하부 종양절제술 경피적 뇌신경계 종양 수술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	B061 B062 B063 B064 B065 B066
신경계 신경자극기 설치술	신경계 신경자극기 설치술	B070
뇌전증 수술	뇌전증 수술(전극삽입술 시행)	B081
	뇌전증 수술(전극삽입술 미시행)	B082